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9 선고 2020가합60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8. 체결된 증여계약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0,403,281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0,530,62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933,90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B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C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2.경 'D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4. 3. 4.경부터 2014. 9. 1.경까지 D조합 명의로 'E의원'(이하 '제1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70,695,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2014. 9. 1.경부터 현재까지 D조합 명의로 'F병원'(이하 '제2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2,621,239,5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5. 16.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79).

3)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8노226), 상고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430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1) B와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 대지 201.7㎡ 및 위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4가구) 및 근린시설을 매수하고, 2002. 2. 20. B와 피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위 토지 및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5. 7. 8.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2015.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등

원고는 2017. 8. 1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제1 의료기관 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372,319,9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제2 의료기관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94,715,6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8. 3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피고의 채권자인 H이 피고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B 등에 대한 공증인가 I 증서 2014년 제25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증여를 157,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H에게 157,6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26211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가 H에게 125,970,413원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H에게 125,970,413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가액회복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22.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범위(150,933,907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H에게 가액회복한 125,970,413원을 공제한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가액의 회복이 마쳐진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2017. 8. 1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환수결정을 통보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20. 상반기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검토하여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20. 6.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사해의사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15. 7. 8. 당시 원고의 요양급여환수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환수채권은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2015. 7. 8.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환수채권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제1 의료기관 및 제2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권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의 신설로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방법으로 구체화되었고, 원고는 2017. 8. 14. B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7. 7. 10.까지 B가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4,467,035,530원(= 4,372,319,930원 + 94,715,6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위 환수처분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일인 2015. 7. 8.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환수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에 대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환수처분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14. 4.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중 B가 납부하지 않은 4,937,738,630원(= 미납원금 4,530,831,890원 + 연체금 406,906,740원)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급여환수채권이 장래의 채권으로서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2015. 7. 8. 이후 발생한 채권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는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진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 당시 B에 대한 수사의뢰조차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B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환수금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증여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고, B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는 2009.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제1 의료기관 및 제2 의료기관 운영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사실 및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할 수 있고 보유한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B는 거액의 요양급여비용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③ B는 피고와 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B는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일한 재산을 모두 증여하는 정도의 재산분할은 설령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 대지 201.7㎡ 및 위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4가구) 및 근린시설을 H과 공동으로 J에게 매도하여 자신의 원래 지분이었던 1/2 상당의 매매대금만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후의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제1 의료기관 및 제2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해 B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J은 2019.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근저당권자 K조합의 2014. 7. 31.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 및 2015. 9. 24.자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이 2019. 8. 9.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감정인 (주)L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11.자 기준 감정가는 415,404,320원(이 사건 1 부동산의 경우 276,329,0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경우 139,075,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H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변제한 금액 125,970,413원,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액 127,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63,500,000원 합계 264,470,413원을 공제한 150,933,907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H에게 125,970,413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 당시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50,000,000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액이 127,000,000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933,9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933,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수영, 판사 정지원, 판사 황정현

별지